

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95호

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출 자	장진호 의원 외 5명
제출연월일	2023. 6. 8.

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호	제95호
--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06. 08.

대표발의자 : 장진호

공동발의자 : 김남충, 조배식,
서승필, 이태모,
윤금숙

1. 제안이유

논산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

나. 기타사항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○ 조례안예고 : 2023. 6. 8. ~ 6. 12.(5일간)

□ 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규칙 제 호

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,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의장과 부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0조에 따라 선출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같은 항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행정자치전문위원”을 “팀장”이라 하며, 같은 항 제4호(중전의 제3호)를 “행정자치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”를 “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장진호 의원 외 5명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법정대리) 논산시의회의장 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, 출장, 기타사고 (이하 “사고” 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2.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<u>행정자치전문위원</u>이 대리한다.</p> <p>3. <u>행정자치전문위원</u>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<u>대리한다.</u></p>	<p>제2조(법정대리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의장과 부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60조에 따라 선출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</u></p> <p>3. ----- ----- -----<u>팀장</u>-----.</p> <p>4. <u>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.</u></p>

「지방자치법」

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